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50
----------	-------

발의연월일 : 2026. 6. 10.

발 의 자 : 허 영 · 김준혁 · 박상혁
소병훈 · 최혁진 · 조계원
박 정 · 한민수 · 서삼석
박용갑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이송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확인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재하여 그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응급의료 현장에서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자의적인 수용 거부를 효과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응급환자가 응급의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2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2항 중 “정당한 사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급환자의 추가 수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부족
2. 해당 응급환자의 처치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 부족
3. 그 밖에 정상적으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